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87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서상열, 심미경,
오금란, 유만희, 유정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
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, 이러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.
- 기존 조례는 도로상 공사 시행 시 안전을 위해 표지판 · 신호수 등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, 작업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신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.
따라서 도로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, 자동화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시 작업자나 보행자,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, 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사 시 작업자 및 보행자,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, 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.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.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③ 공사 시 작업자 및 보행자,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, 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제3항	△	[추계 곤란] 도로상 공사 시행자(이하 시행자)의 안전관련 신기술 사용 장려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가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·합리적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본 의안은 도로상 공사 시행자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신기술 사용 독려를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
도로 등 관련 시설물의 최종 관리·감독 책임자인 서울시 차원의 신기술 도입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
있으나 적용기술 및 범위 등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가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·합리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